

제315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5 호

국회사무처

2013년4월30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315회국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3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5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부의된 안건

1. 제315회국회(임사회) 회기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
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덕수 의원 대표발의)(안덕수 · 윤진식 · 박민식 · 주영순 · 이진복 · 염동열 · 박상은 · 강기윤 · 강석훈 · 홍일표 의원 발의) 6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박남춘 · 박홍근 · 김용익 · 조정식 · 전병헌 · 백재현 · 김성주 · 박완주 · 배기운 의원 발의) 6
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 · 양승조 · 강기윤 · 이상민 · 김제남 · 주승용 · 배기운 · 김성곤 · 이윤석 · 이재영 의원 발의) 6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이윤석 · 김세연 · 강기정 · 백재현 · 김성곤 · 김동철 · 안민석 · 이낙연 · 유성엽 · 김영록 의원 발의) 6
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중범 의원 대표발의)(안중범 · 김성태 · 김광립 · 조해진 · 김동완 · 김정록 · 강은희 · 신의진 · 이만우 · 김장실 · 손인춘 · 민현주 · 최봉홍 · 진영 · 이종훈 · 민병주 · 윤명희 · 이자스민 · 김상민 · 박근혜 · 류성걸 · 김현숙 · 박성호 · 류지영 의원 발의) 7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중범 의원 대표발의)(안중범 · 김광립 · 조해진 · 김성태 · 김동완 · 김정록 · 강은희 · 신의진 · 이만우 · 김장실 · 손인춘 · 민현주 · 최봉홍 · 진영 · 이종훈 · 이자스민 · 민병주 · 윤명희 · 김상민 · 박근혜 · 류성걸 · 김현숙 · 박성호 · 류지영 의원 발의) 7

1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이예리사 · 유성엽 · 송광호 · 김종태 · 김우남 · 박인숙 · 이만우 · 김동완 · 이노근 · 조명철 · 신경림 · 민현주 · 강은희 · 김학용 · 이장우 · 김상민 · 남경필 · 윤재옥 · 강석호 · 김재원 · 황영철 · 최규성 · 이자스민 · 김태흠 · 신의진 · 류지영 · 김춘진 · 김을동 · 서상기 · 정희수 · 송영근 · 이채익 · 원유철 · 윤진식 · 김장실 · 신성범 · 김근태 · 홍문표 · 경대수 · 손인춘 · 유승우 · 최봉홍 · 진영 · 김영우 · 전정희 · 고희선 · 김영록 · 주영순 · 김정록 · 민병주 · 김진태 · 홍지만 · 김한표 의원 발의) 8
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노근 · 김태흠 · 이종진 · 이이재 · 강석호 · 문대성 · 이현재 · 원유철 · 송광호 의원 발의) 8
1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완중 의원 대표발의)(성완중 · 홍문표 · 김태흠 · 박수현 · 양승조 · 이장우 · 손인춘 · 박성호 · 김명연 · 주영순 · 김동완 · 함진규 · 박완주 · 박남춘 · 최원식 · 이학영 · 신장용 의원 발의) 8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배기운 · 주승용 · 박영선 · 백재현 · 최규성 · 유대운 · 문병호 · 홍일표 · 부좌현 · 김재윤 · 정성호 · 한정애 · 박남춘 · 이미경 · 민홍철 · 김영환 · 강기정 · 유성엽 · 김윤덕 · 이상민 · 홍종학 · 황주홍 · 김현 · 박범계 의원 발의) 10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박성호 · 신성범 · 김한표 · 류지영 · 조원진 · 여상규 · 정희수 · 은수미 · 윤명희 · 박창식 · 강은희 · 송영근 의원 발의) 10
1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0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희수 · 강기운 · 李宰榮 · 정의화 · 강석호 · 김을동 · 김정록 · 이채익 · 박인숙 의원 발의) 11
2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 · 김한표 · 이명수 · 강기운 · 이노근 · 박상은 · 이이재 · 조현룡 · 윤진식 · 안효대 의원 발의) 11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
25.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29.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주승용 · 김동철 · 이낙연 · 김성곤 · 우윤근 · 김우남 · 김재윤 · 문병호 · 김영록 의원 발의) 15
3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3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정문헌 · 김정록 · 손인춘 · 한기호 · 김진태 · 김기선 · 염동열 · 김동완 · 박성호 · 황진하 · 정희수 · 김재원 의원 발의) 16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7
3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이인영 · 안민석 · 김춘진 · 유승우 · 이상직 · 김우남 · 강창일 · 윤관석 · 김성곤 · 전해철 · 정호준 · 신경민 · 배기운 · 전순옥 의원 발의) 17
3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이한성 · 김재경 · 정문헌 · 정희수 · 이진복 · 정진후 · 강길부 · 장윤석 · 송영근 · 이재영 · 안홍준 · 강석호 의원 발의) 17
3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8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8

38.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4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 · 김관영 · 홍의락 · 박완주 · 우윤근 · 이종걸 · 김동철 · 배재정 · 인재근 · 백재현 · 한명숙 · 최동익 · 김영록 · 전순옥 · 김영환 · 조경태 · 노영민 · 이원욱 · 김민기 · 이목희 · 추미애 · 부좌현 · 전정희 · 윤관석 · 최민희 · 장병완 · 이춘석 · 홍종학 · 박주선 · 강창일 의원 발의) 18

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0

4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0

4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심상정 · 배재정 · 배기운 · 김운덕 · 윤관석 · 홍영표 · 우원식 · 장하나 · 한정애 의원 발의) 20

4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강석훈 · 홍지만 · 문대성 · 강은희 · 민현주 · 이자스민 · 민병주 · 신의진 · 이완영 의원 발의) 20

4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이명수 · 박대동 · 박인숙 · 한기호 · 정성호 · 이철우 · 김태원 · 권은희 · 고희선 의원 발의) 20

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이윤석 · 김세연 · 강기정 · 백재현 · 김성곤 · 김동철 · 안민석 · 이낙연 · 유성엽 · 김영록 의원 발의) 20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2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2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2

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2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2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6

5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

5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8

5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8

 o 5분자유발언 28

(15시12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15회국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국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지난 1차 본회의에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3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일간 연장하여 5월 7일

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4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비송사건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최원식**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인천 계양구를 출신 민주통합당 최원식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낙연 의원, 심재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마련한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범죄수익이 환수된 경우에는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부정청탁,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유통, 청소년·아동을 이용한 불법영업,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재산상 부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를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에 추가하여 해당 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갑윤 의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마련한 대안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법조윤리협회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법조윤리협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직 퇴임 변호사 또는 특정 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

한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된 신탁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 및 신탁재산관리인 등의 선임·해임 사유와 권한이 정비됨에 따라 관련 등기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 신탁제도가 신설되고 사해신탁 취소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유한책임신탁 관련 재판절차를 정비하고 사해신탁 취소 상대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유한책임신탁재산의 경우 법인의 예에 따라 지급 불능 시 필수적으로 파산선고를 하되 채무 초과 시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하도록 수정하였고, 파산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은 후에 수탁자 등을 구인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이 신설되는 등 재판 관련 내용이 변경·신설됨을 반영하여 비송사건 재판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 결정 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탁변경의 재판 시 신청권자인 위탁자에 대하여도 법원이 의견을 듣게 하고 위탁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신탁법상 비송사건 관련 절차와 문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건물·토지·특정 동산의 인도에까지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공정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기간을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과 이사 준비 등을 고려하여 건물의 인도·반환 전 '3개월 이내' 작성에서 '6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수정하였고,

거짓 선서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주체를 선서인증을 한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덕수 의원 대표발의)(안덕수·윤진식·박민식·주영순·이진복·염동열·박상은·강기운·강석훈·홍일표 의원 발의)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박남춘·박홍근·김용익·조정식·전병헌·백재현·김성주·박완주·배기운 의원 발의)

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양승조·강기운·이상민·김제남·주승용·배기운·김성곤·이윤석·이재영 의원 발의)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김우남·이윤석·김세연·강기정·백재현·김성곤·김동철·안민석·이낙연·유성엽·김영록 의원 발의)

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중범 의원 대표발의)(안중범·김성태·김광림·조해진·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박근혜·류성걸·김현숙·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중범 의원 대표발의)(안중범·김광림·조해진·김성태·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이자스민·민병주·윤명희·김상민·박근혜·류성걸·김현숙·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15시28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8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안덕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안덕수**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정무위원회 안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의 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공무원 등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등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시정권고의 공표는 행정절차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선거 운동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소액거래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중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업무를 허용하고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시키는 내용으로 법률용어를 통일하고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에 대한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2인, 기권 3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09인, 반대 8인, 기권 5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윤명희 · 이에리사 · 유성엽 · 송광호 · 김중태 · 김우남 · 박인숙 · 이만우 · 김동완 · 이노근 · 조명철 · 신경림 · 민현주 · 강은희 · 김학용 · 이장우 · 김상민 · 남경필 · 윤재옥 · 강석호 · 김재원 · 황영철 · 최규성 · 이자스민 · 김태흠 · 신의진 · 류지영 · 김춘진 · 김을동 · 서상기 · 정희수 · 송영근 · 이채익 · 원유철 · 윤진식 · 김장실 · 신성범 · 김근태 · 홍문표 · 경대수 · 손인춘 · 유승우 · 최봉홍 · 진영 · 김영우 · 전정희 · 고희선 · 김영록 · 주영순 · 김정록 · 민병주 · 김진태 · 홍지만 · 김한표 의원 발의)

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함진규 · 이노근 · 김태흠 · 이종진 · 이이재 · 강석호 · 문대성 · 이현재 · 원유철 · 송광호 의원 발의)

1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완중 의원 대표발의)

(성완중 · 홍문표 · 김태흠 · 박수현 · 양승조 · 이장우 · 손인춘 · 박성효 · 김명연 · 주영순 · 김동완 · 함진규 · 박완주 · 박남춘 · 최원식 · 이학영 · 신장용 의원 발의)

(15시40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홍문표**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예산·홍성 출신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그리고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정법으로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재산권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의 도선행위 시 면허취소 등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행일의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고 경과조치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완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 및 정책 반영을 의무화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피해지역의 지원사업에 교육과 문화, 관광, 복지 등을 추가하였고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청취한 의견의 정책반영 의무화 여부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판기간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과 법원행정처 의견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하였으며, 피해주민단체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

에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제안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배기운·주승용·박영선·백재현·최규성·유대운·문병호·홍일표·부좌현·김재운·정성호·한정애·박남춘·이미경·민홍철·김영환·강기정·유성엽·김윤덕·이상민·홍중학·황주홍·김현·박범계 의원 발의)
(15시48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7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이채익**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채익 의원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정된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산업단지의 지정 후 착공 또는 준공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 시점을 지정해서 착공으로 변경하여 착공 후 3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등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 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성호·신성범·김한표·류지영·조원진·여상규·정희수·은수미·윤명희·박창식·강은희·송영근 의원 발의)

1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52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8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의원 단상으로 오르며 — 최봉홍입니다.)

예? 아, 최봉홍 의원!

죄송합니다.

최봉홍 의원!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최봉홍**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용가능자원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세출의 용도에 영세 운반·수집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두고,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법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환경감시관의 단속활동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되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1인 중 찬성 227인, 기권 4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희수·강기윤·李宰榮·정의화·강석호·김을동·김정록·이채익·박인숙 의원 발의)

2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한표·이명수·강기윤·이노근·박상은·이이재·조현룡·윤진식·안효대 의원 발의)

(15시59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강석호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주거지역 등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서비스산업을 '건축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아닌 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8인, 기권 15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2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시04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3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민식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 북구 갑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이종걸 의원이 대

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금융업자들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기관 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평가하도록 하며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시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이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진영 의원, 오제세 의원, 이상직 의원, 홍영표 의원, 노웅래 의원, 이목희 의원, 전병헌 의원, 이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기술유행 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행위에 대하여 3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결렬 시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수급사업자의 신고를 이유로 수주기회의 제한 및 거래 정지 등 원사업자의 보복조치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무위원회의 김용태 의원입니다.

입법을 하려면 입법목적은 달성하고 예기치 않은 과장 즉 후방효과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입법 목적을 일부 달성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후방효과를 차단치 못하면 그 입법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도급법 개정안은 입법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전혀 예기치 못한 나쁜 후방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부당 하도급의 유형으로 기술 탈취,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반품, 부당 발주 취소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의 처벌 즉 형사처벌, 행정제재, 실손해 배상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부당 반품, 부당 발주 취소, 특히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해서 형사처벌, 행정제재, 실손해 배상 이외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이 목적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을 처벌하겠다는 것만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강요하여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위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입법취지에는 백 번 동의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고 동일 범죄의 다중 처벌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것을 근절하자는 데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기치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란 이론상 그리고 실제로 무한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이 타깃으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과 소기업 간, 소기업과 개인 간에도 무수한 하도급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집을 지을 때 소위 심장과 목수 사이에도 하도급 관계가 실제합니다.

실제 경제세계에서 하도급 분쟁의 대부분은 단가부분입니다. 이 개정안이 목적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단가 인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다고 해결이 될까요? 중소기업이 설령 대기업한테 단가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래를, 거래 단절을 각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당국도, 업계에서도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기타의 하도급 관계입니다. 기타의 하도급 즉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기업과 개인 간의 하도급 관계에서는 이 단가부분을 갖고 엄청난 분쟁이 벌어져서 이제 소송이 빈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현장에 미치는 갈등과 혼란이 엄청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법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당 하도급을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면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사인 간의 분쟁을 부추겨 우리나라를 소송 천국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바로 저의 주장입니다.

특히나 이 개정안에는 부당 하도급의 사유로 고의 및 과실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을 사유로 해서 아마도 소송사태가 남발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도급법의 개정취지 그리고 이 하도급법이 사실상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특히 지난 대선 공간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결코 도그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현실에 얼마나 튼튼히 발 딛고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 입법부이자 바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는 합리적이고 경제 현실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 때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함께 여야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또 국민 앞에 합의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가 대선 이후에 공통공약을 실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우리 국회 정무위에서는 또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수차례

에 걸쳐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을 걸러보는 노력을 했고 이것이 과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또 남소의 가능성이 있느냐, 또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따져 보았습니다.

우선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제한이 없을 경우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상충될 수 있겠으나 명백하게 3배로 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과는 상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복처벌 금지에 관해서 민사, 행정, 형사 이 세 가지 제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하는 쟁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형사처벌을 이중적으로 하지 않는 한 민사와 행정에 대해서 별도의 징벌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과거의 판례고 또 미국의 사례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실손해 배상 원칙에 대해서도 경제주체들이 범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대손실이 기대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도 큰 이의가 없고 또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용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중소기업과 개인 간 여러 가지 연결고리에서 밑으로부터의 어떤 분쟁과 남소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 분명한 어떤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그 질서가 사실은 밑으로 전이되고 규제되고 사회적 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충부에서부터 이런 질서를 바로잡아 나간다고 한다면 밑에서의 그러한 분쟁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사회적 원칙으로서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공정거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의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의과실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 혹은 원사업자가 대부분 갖고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우리 정무위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같이 고민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대부분의 위원들이 또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함께 했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한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의 합의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계기로 해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애플과 혁신해서 경쟁하고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에는 평화가 잔잔하게 가득차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전진이라고 생각하시고 찬성 표결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4인, 기권 30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20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5항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성린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입니다.

1건만 달랑 가지고 올라와서 심사보고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4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건이 법사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령체계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9.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주승용 · 김동철 · 이낙연 · 김성곤 · 우윤근 · 김우남 · 김재윤 · 문병호 · 김영록 의원 발의)
(16시22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6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인숙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제안한 4건의 법률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에는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군복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로 일반상환 및 신용보증부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비상임감사를 상임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둘째,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 국제경기 지원법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대회운영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른 법체계 정비가 주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의 대회기금 조성 재원에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취
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인, 기권 5인
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6인, 기권 18
인으로서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
발의)(정문헌 · 김정록 · 손인춘 · 한기호 ·**

김진태 · 김기선 · 염동열 · 김동완 · 박성호 ·
황진하 · 정희수 · 김재원 의원 발의)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31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0항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남북 이산가족 생
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3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정문헌** 존경하는 의장,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정문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여권업무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전자서명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
으로서 여권 발급 신청시간을 단축하여 여권발급
신청인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으로서 검사 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법률에 규정
하고 개인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시 처
벌을 엄격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이해찬 의원, 이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
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재 20명에서 25명으
로 증원하고 자문위원 결원 시 위촉절차를 법률

에 규정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이인영·안민석·김춘진·유승우·이상직·김우남·강창일·윤관석·김성곤·전해철·정호준·신경민·배기운·전순옥 의원 발의)

3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정갑윤·이한성·김재경·정문현·정희수·이진복·정진후·강길부·장윤석·송영근·이재영·안홍준·강석호 의원 발의)

(16시39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안규백**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출신 국방위원회 안규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찬 의원, 김태원 의원, 김종태 의원, 신학용 의원, 송영근 의원, 김광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8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 현행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인인 외부강사가 예비군훈련 중 정치운동 등의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반인에 대한 처벌은 동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처벌규정을 삭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잔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심사기간 및 법률의 유효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중무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8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0인, 기권 6인으로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은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38.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 · 김관영 · 홍의락 · 박완주 · 우윤근 · 이종걸 · 김동철 · 배재정 · 인재근 · 백재현 · 한명숙 · 최동익 · 김영록 · 전순옥 · 김영환 · 조경태 · 노영민 · 이원욱 · 김민기 · 이목희 · 추미애 · 부좌현 · 전정희 · 윤관석 · 최민희 · 장병완 · 이춘석 · 홍종학 · 박주선 · 강창일 의원 발의)

(16시47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6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4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이채익**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새누리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채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이 발의하고 이현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현행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설치된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 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 박완주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법률 부칙에 2016년 말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상품권의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 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이 법의 시장경영진흥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복수 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심사관의 직권보정에 대해 출원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특허넷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테

크노파크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테크노파크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 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4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4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심상정·배재정·배기운·김윤덕·윤관석·홍영표·우원식·장하나·한정애 의원 발의)

4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강석훈·홍지만·문대성·강은희·민현주·이자스민·민병주·신의진·이완영 의원 발의)

4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명수·박대동·박인숙·한기호·정성호·이철우·김태원·권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윤석·김세연·강기정·백재현·김성곤·김동철·안민석·이낙연·유성엽·김영록 의원 발의)

(16시57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4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재근 의원 나오셔서 이상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인재근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도봉갑 출신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류지영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질병 감염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호시설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며,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와 이자스민 의원, 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청소년 활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결격사유 적용 청소년단체의 임원의 범위를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밖의 회칙에서 정한 임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에 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가사를 추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또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7시10분)

○부의장 박병석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제47항부터 제53항까지 7건의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시11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4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김영주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서울 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과 이목희 의원,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는 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고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7시15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4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성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예산안 제출일을 현행 대비 30일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 등을 예산안 제출 시기의 조정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야당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변재일 의장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하는 김에 좀 더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 원 이하이거나 면적 85㎡ 이하인 신축 주택,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이따가 반대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시 올라와서 찬성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이유로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제 대상이 너무 좁아서 효과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자본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교육지책이고 중산·서민층과 하우스 푸어들의 주택 처분을 한시적으로 돕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경기 성남 분당갑 출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면제를 위한 주택 기준이 85㎡ 또는 6억 원 이하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의 10억 원가량의 85㎡, 33평형 아파트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가 정말 필요한 지역, 즉 분당·일산·산본 등 1기 신도시와 파주·김포·고양·구리·용인·수원 등의 서울 주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7억 원가량의 104㎡, 42평 아파트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형평성의 문제, 지역 간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1기 신도시 지역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한 지역입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거래 자체가 단절돼 있습니다.

둘째, 지어진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낡은 주택에서 신규 분양 주택으로 이사 가신 분들 또 이사 가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택들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면 이분들은 의도하지 않게 2주택 보유자가 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 중에서 40평대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 중 다수가 노령층입

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대형 평형의 주택을 팔고 좀더 작은 소형 평형의 주택으로 옮기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을 기준으로 이분들이 소외된다면 이분들이 소유한 주택 40평대를 팔 수가 없게 돼서 소형 평형 주택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정책이 아무리 옳은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현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기준을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지역적 역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 부동산 대책과 같은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은 한 번에 그리고 충분히 필요한 범위까지 대책이 적용되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상황을 봐 가면서 여러 번의 대책을 남발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김재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르면서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무척 날씨가 좋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전세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수천만 원, 1억 원이 갓 넘는 그런 집도 마련하지 못해서 이번 봄에도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많은 청년들을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만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 법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5년간의 양도소득세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닙니다. 단순히 집을 팔았다고 내는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집을 팔아서 수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직장인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어도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수억 원이 발생해도 그 소득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첫 번째 원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도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즉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정책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1세대 다주택자일 뿐입니다.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 법의 목적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구매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로 확장되지 못하고 단순히 다주택자들에게만 투기 리그 차원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와 같은 가수요만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 약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을 통한 정책만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대책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남의 부동산 호가 상승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 투기 세력의 양도 차익의 세금을 걷는 대신 이를 통해 생긴 재원으로 저리 대출, 채무 조정 등을 통해서 렌트 푸어와 하우스 푸어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부디 다주택자

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동 법의 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한 분의 토론이 더 계십니다.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컸습니다만,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반대의 취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에서 반대가 많고 논란이 많은 법안을 꼭 처리해야 될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에 묶여 있는 하우스 푸어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자들의 추가 수요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일시적인 투기 수요는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부동산 부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부동산 부자들의 돈벌이에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투기 수요를 통해 하우스 푸어 해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 보겠다는 발상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보정의당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거래의 감소는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구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소득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이제 돈을 빌려 집 사고 시세차익 남겨서 되파는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사회 여건은 변했고 주택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변했는데 오로지 정부 정책만 기존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합의한 정부 여당과 민주당은 모두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라는 4·1 대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열여덟 차례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열아홉 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많이 약화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일시에 부동산 거품을 제거한 것과 다르게 우리는 매번 인위적 부양책으로 거품을 키워 왔고 이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독이 되어 왔습니다. 경기부양을 외치며 부동산 도박을 통해 거품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폭탄 돌리기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 조장이 아닌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기를 이 차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33인, 반대 41인, 기권 28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시34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5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황영철**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경북 성산·구미 출신의 김태환 안행위원장과 경기 과주갑 출신의 윤후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둘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 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최저세율의 재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안행위 여야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찬성표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한 분이십니다.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입니다.

방금 황영철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곧바로 나오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박근혜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양도세·취득세 감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추진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감세 정책 들입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며 누더기가 될 지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이번엔야말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세금 감면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거래 취득세·양도세 감면이 부동산 거래 시기를 일시적으로 앞당겨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착시효과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 부동산 거래 물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율 감면 조치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었다면 부동산 실물경기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전 세계의 경제상황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장을 저하에 따른 세입결손 6조를 반영한 이번 추경안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근본적 해결 없이 세율 감면으로 어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보급을 늘리고 주택가격을 하향안정화시켜 친서민적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4·1은부동산 대책 지방세 손실보전을 위해 6조 원 이상의 증액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지방세를 국세로 메워 주고 결국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국가재정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DTI, LTV 규제 완화는 결국 빚내서 집 사라지는 것으로 가계의 재정도 악화될 것입니다. 국가 채무, 가계채무를 증가시키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선거 때 공약했는데 첫해에 바로 증세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를 줄 압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정 마련을 위해서도 증세도 모자랄 판입니다.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을 위해 더 이상 감면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정상적 조세 운용이 이루어

어져야 합니다. 비과세 감면의 정리, 지하경제 양성화, 숨은 재원 찾기에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포폴리즘적 한시 감면, 이번에는 막아 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21인, 기권 23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시41분)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 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의 제조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고 유해성 평가는 100t 이상인 화학물질에 대해서 실시

하되 5년 뒤에는 10t 이상인 화학물질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그때 주5일제법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사회의 대변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이후 이번 정년60세법안은 다시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야 간에 정말 심도 깊게 많이 논의된 내용이고 하니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야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58인, 반대 6인, 기권 33인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7시46분)

○부의장 박병석 한 가지 양해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제54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강석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양승조 의원안, 박주선 의원안, 서병수 의원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 방침을, 지자체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를 비롯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17시50분)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입니다.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조차도 쉽사리 통과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그리고 최근의 삼성 전자 불산 누출사고, 이런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구미 불산 사고가 났을 때 수많은 국회의원들, 모든 상임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대처 방안과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에서는 경영활동에 저해가 되는 입법활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관련 법안의 입법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려는 법조차 경영활동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면 국회가 나 몰라라 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업은 경제5단체

같은 든든한 바람막이라도 있고 자신들의 손해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 로비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줄 든든한 바람막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한 분 한 분이 입법 기관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바람막이가 되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대신 국회에 가서 내 생명과 안전을 잘 좀 지켜 주세요’ 이렇게 하며 뽑아 준 것 아닌가요? 경제5단체가 여러분들을 뽑아 주었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토록 시급을 다투는 법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처리를 미루는 동안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불행한 일이 또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때 국민들께서 ‘국회,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찌 국민들을 보고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경영활동의 저해라는 명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법 시행 시점조차도 2015년이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1년 8개월이라는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과징금과 처벌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책임지는 기업의 자세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그 의무감의 결정체인 이번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정법안이, 그리고 그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을 위한 길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더 이상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지 말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서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평택 출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개성공단이라는 남북 관계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협력과 상생의 꽃을 피워 온 평화의 화원에 찬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천안함 북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북한의 도발에도 굳건히 유지되었던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우리 측 체류 인원 대부분이 귀환함으로써 힘겹게 버텨던 혈맹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지난 11일 우리 정부는 통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아무 내용 없는 빈껍데기라며 일축하고 묵살하였습니다.

식자재와 의약품 같은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도 차단당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전원 귀환 조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존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던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작도 해 보기 전에 북한의 일방적인 거절로 번번이 좌절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태를 포함한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한반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결의안 채택에서 보듯이 핵에 가까이가면 갈수록 제재와 고립으로 이어지는 파멸의 늪으로 더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에 이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또다시 산하 기관들에 하달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혈맹이라고 주장하는 중국마저 북한의 거둬들인 도발에 과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화와 협력, 공생과 공영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국제사회의 품격 있는 국가로 나와 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제 발등 찍기식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결자해지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실기 위해 차에 잔뜩 짐을 실은 채 귀환하는 마지막 잔류 인원들의 안타까운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끝까지 공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착잡한 심정을 가누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 분들의 애타는 심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재산권 보호와 피해 보전을 위한 만반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도발·제재·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고 남북 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고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최고의 안보는 하나 된 국민의 마음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동맹과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에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끊어진 숨통을 틔우고 나아가 한반도의 잘린 허리를 다시 이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역사적 소명을 갖고 책임 있고 의연하게 뚝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입니다.

내일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반세기가 조금 넘는 세월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 낼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과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근로자들에게 힘들어만 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1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6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회원국 국민들보다 1년에 적게는 300시간 많게는 4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두 달 가까이 더 일하는 셈입니다.

근로자들은 끝없는 야근과 추가근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공휴일 제도와 관련한 법안을 입안하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서로 겹쳐 보장받지 못했던 공휴일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고 그동안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만을 중시한 이명박정부는 경제단체가 주장하는 비용을 근거로 해서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또한 수십 조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경총의 의견만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년에 걸친 법안논의 과정을 통해

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제도의 미비로 인해 빼앗긴 공휴일을 되찾아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정부 140개의 국정과제 중 81번째의 국정과제로 대체공휴일 제도를 명시화했습니다.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발휘해서 7명의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200여 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시된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입을 찬성하는 직장인이 95%에 달할 만큼 국민적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국회가 하루빨리 해당 법률안을 개정해 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대체공휴일 제도 입법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국민을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정부의 특임장관실에서 작성한 왜곡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전행정부는 공청회나 시대에 맞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과거의 기준과 잣대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장관은 공론화 과정 없는 입법화는 적절하지 않다, 정치권이 국민 생활과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1조 4000억의 추가 부담이 든다는 재계의 주장을, 2013년에는 32조라는 경총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그냥 좋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수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대신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국민에 부여된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와 관련한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만이 입법 발의한 법안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20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법안입니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며 어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의사일정까지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하기로 했던 약속과 달리 법안 처리 직전에 새누리당 간사의 약속 파기와 위원장의 일방적인 정회 선포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대명제조차 성사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입법화를 거쳐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공휴일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의진입니다.

지난 4월 18일 부산 어린이집에서 17개월 여아가 교사들로부터 맞아 피멍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발생 후에도 옆에 있는 남자아이가 때렸다며 은폐를 시도한 원장과 가정폭력을 어린이집에 덮어씌우려 한다고 부모를 오히려 가해자로 몬 교사의 태도는 더욱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의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CCTV 설치 확대를 주장합니다마는 신체적 학대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방임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문가·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빨리 구성해서 사전 안전조치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 학대를 예방하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참여와 전문가를 통한 진단이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실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대응체계가 절실합니다. 부산 사건의 경우에도 피명이 잘 안 보여서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적반하장격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저는 학대가 의심되는 부모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하면 전문가가 출동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응급출동 대응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숨겨진 학대에서 고통받는 아동을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대책도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에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마는 가해자로 처벌받은 이후에 같은 업에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적으로 그 아동학대 행위자와 원장에 대해서 자격증 박탈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유아기는 전 생애 발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학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가보육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발생한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대 여성의 인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입니다.

조사 권한도 없는 정당 관계자가 한 여성의 신원을 알기 위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 진을 치고 사실상 감금당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당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일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이 여성이 왜 이런 인권유린을 당해야 합니까? 누가 집권하든 그 대상이 누구든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 그리고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

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 아닙니까?

인권유린을 행한 당사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 어떠한 범죄행위도 용납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건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젊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불법선거개입 수사만큼이나 중요한 인권유린사건도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 가족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호소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중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지영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민병주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박성호	박성효	박완주	박원석
유은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李宰榮	이종결	이종진	이종훈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이찬열	이채익	이학재	이한구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병국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은수미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이상일
최봉홍	최원식	하태경	한기호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결
홍지만	황영철	황진하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기권 의원(1인)

박원석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결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학재	이한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백재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5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체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학재
이한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전순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4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체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이상일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이석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이찬열	이채익	이학재	이한구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진하진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에리사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황주홍	황진하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기권 의원(2인)

전순옥 주호영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5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춘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학재	이한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병국
전정희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민병두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6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강경대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국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학재 이한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최원식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전순옥 추미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영주 김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현국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 원혜 유승우 윤영수 이노근 이상규 이완영 이이재 이종진 이채익 이현승 임수경 전순옥 정병국 정의화 정희수 조정식 진성준 추미애 한선교 홍문표 홍일표 황주홍

우상호 유기홍 유승희 윤관석 이만우 이상현 이인영 이종훈 이현재 장병완 정성호 정진후 조경태 주영순 최규성 하태경 한영표 홍종학

우윤근 유대은 유은혜 윤명희 윤진식 이명수 이석기 이운룡 이자스민 이재오 이주영 이한구 인재근 장하나 전하진 정수청 조명철 주호영 최봉홍 한기호 함진규 홍지만

원유철 유승민 유인태 윤상후 이낙연 이미리 이원욱 이장우 이찬열 이한성 임병헌 정몽우 정호준 진선미 최재천 현영희 표철

김재원 김제남 김춘진 김한형 남경필 류성정 문홍민 박성원 박혜군 서광신 신재안 안효제 유승우 윤영수 이노근 이우현 이인영 이종훈 이학영 이현승 임수경 정병국 정희수 진성준 추미애 한선교 홍문표 홍일표 황주홍

김재윤 김태년 김현국 남인순 류희창 박민식 박성효 박인숙 박홍재 송영근 신동철 안염우 유승희 윤관석 이강후 이만우 이석기 이운룡 이자스민 이재오 이주영 이학재 이현재 인재근 장하나 전정희 정성호 정진후 주영순 최규성 한기호 현영희 표철

김정록 김종훈 김태원 김현미 김희영 노문병 박대석 박수현 박기운 배재완 성경림 신성범 심학철 안오유 유대운 유은혜 윤명희 이군현 이명수 이예리 이장우 이찬열 이한성 임병헌 정몽우 정호준 진선미 최재천 현영희 표철

김정훈 김진태 김현숙 나도문 민병대 박상완 박창재 배부손 신계윤 심안홍 오원유 유승민 유인태 윤상후 이낙연 이상규 이완영 이이재 이종진 이채익 이현승 임수경 전순옥 정병국 정의화 정희수 조정식 진성준 추미애 한선교 홍문표 홍일표 황주홍

기권 의원(2인)

김영록 이학영
(이종결 의원 착오로 김영환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224인, 기권 의원 2인 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4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제남 김춘진 김한형 남경필 류성정 문홍민 박성원 박혜군 서광신 신재안 안효제 유승우 윤영수 이노근 이우현 이인영 이종훈 이학영 이현승 임수경 정병국 정희수 진성준 추미애 한선교 홍문표 홍일표 황주홍

김재윤 김태년 김현국 남인순 류희창 박민식 박성효 박인숙 박홍재 송영근 신동철 안염우 유승희 윤관석 이강후 이만우 이석기 이운룡 이자스민 이재오 이주영 이학재 이현재 인재근 장하나 전정희 정성호 정진후 주영순 최규성 한기호 현영희 표철

김정록 김종훈 김태원 김현미 김희영 노문병 박대석 박수현 박기운 배재완 성경림 신성범 심학철 안오유 유대운 유은혜 윤명희 이군현 이명수 이예리 이장우 이찬열 이한성 임병헌 정몽우 정호준 진선미 최재천 현영희 표철

김정훈 김진태 김현숙 나도문 민병대 박상완 박창재 배부손 신계윤 심안홍 오원유 유대운 유은혜 윤명희 이군현 이명수 이예리 이장우 이찬열 이한성 임병헌 정몽우 정호준 진선미 최재천 현영희 표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1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현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이채익 정몽준

(안홍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1인, 기권 의원 2인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9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김세연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성완종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김재운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신의진	신장용	심상정	심윤조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김희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이상일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이석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전하진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유대운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기권 의원(3인)

신학용 전순욱 한명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0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김세연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재운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태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김희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주 홍	황 진 하		
반대 의원(8인)			
김 미 희	김 선 동	김 재 연	김 제 남
오 병 윤	이 상 규	이 석 기	정 진 후
기권 의원(5인)			
문 병 호	박 원 석	심 상 정	유 승 민
전 순 옥			

(강은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223인, 찬성 의원 210인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19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중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흙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희 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중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중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석 기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중 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정 희
진 하 진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봉 홍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중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주 홍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박 민 수			
기권 의원(5인)			
김 윤 덕	문 병 호	유 승 민	전 순 옥
홍 의 락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4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9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기권 의원(3인)

민병두	우원식	전순욱
-----	-----	-----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하 나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봉 홍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이 재 오 전 순 옥
 (나성린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
 원 219인, 기권 의원 2인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5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채 원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제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흙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흥 철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석 기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하 나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봉 홍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박 민 수 배 기 운 전 순 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7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정희수			
기권 의원(4인)			
민병주	안철수	유승민	최규성
(이채익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222인, 찬성 의원 217인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5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남인순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윤재욱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이목희	이병석	이상일	이석기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최규성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황진하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1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기권 의원(1인)

주 호 영

(이재오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31인, 기권 의원 1인임)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석 기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봉 홍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7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 永 柱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중	손 인 춘
송 광 호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기권 의원(4인)

김 중 훈 민 병 주 심 재 철 정 성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198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 永 柱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중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지 영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홍 근	백 군 기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주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철우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최규성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중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18인)

김경협 김광진 김민기 김진표
 남인순 문병호 배재정 안규백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진선미 추미애
 한명숙 홍익표

기권 의원(15인)

김우남 김현미 노영민 문재인
 민병주 배기운 백재현 오영식
 유대운 유은혜 이인영 이종걸
 진성준 한정애 홍의락

찬성 의원(230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창일
 경대수 고희선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에리사 이완영 이석기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우현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인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우택 정호준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최규성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중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투표 의원(232인)**

이한성 이혜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일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우여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반대 의원(1인)

전순옥

기권 의원(1인)

이목희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혜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정진후

(이미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30인, 기권 의원 1인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30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171인)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김광립 김기현 김민기 김성주 김영록 김용익 김재윤 김춘진 김현미 나성린 도종환 문희상 박남춘 박민식 박원석 배기운 변재일 성완중 신계륜 신장용 안규백 여상규 오제세 유기홍 유은혜 윤영석 이노근 이병석 이석현 이인영 이주영 이학영 임내현 진병헌 정성호 정진후 조정식 최동익 추미애 홍의락 황영철
 길정우 김광진 김동철 김상희 김성태 김영주 김우남 김제남 김태년 김현숙 남경필 류지영 민병두 박대동 박병석 박인숙 배재정 부좌현 손인춘 신기남 신학용 안덕수 염동열 우상호 유대운 유인태 윤재옥 이만우 이에리사 李宰榮 이찬열 이해찬 임수경 정수성 정청래 진선미 최봉홍 한명숙 황우여
 김경협 김기선 김명연 김선동 김세연 金永柱 김을동 김종훈 김태환 김형태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박대출 박수현 박혜자 백군기 서기호 송광호 신동우 심상정 안종범 오병윤 우원식 유승민 윤관석 윤후덕 이목희 이상일 이원욱 이종걸 이철우 이현재 장병완 장진희 정우택 정호준 진성준 최재성 한정애 홍일표 황주홍

반대 의원(24인)

강석호 김용태 경대수 김재원 고희선 김정록 김무성 김태원

김학용 송영근 이재영 주호영 김희국 안홍준 이재오 하태경 박성호 유승우 이종진 한기호 박성효 이완영 조원진 한선교

기권 의원(30인)

김상훈 민병주 심윤조 원유철 이강후 이진복 전하진 홍문표 김영우 박주선 심재철 유기준 이명수 이학재 정병국 김한표 서병수 심학봉 유재중 이운룡 이한성 주영순 문정림 신의진 안효대 윤상현 이자스민 이현승 최경환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강길부 강창일 길정우 김기선 김명연 김상민 김성곤 김영록 김용익 김재연 김정훈 김춘진 김태흠 김현미 김희정 노영민 문재인 민병주 박대동 박병석 박완주 박혜자 백군기 서기호 송영근 신동우 신학용 심재철 강동원 강창희 김경협 김기준 김무성 김상훈 김성주 김영우 김용태 김재원 김제남 김태년 김학용 김현숙 나성린 도종환 문정림 민홍철 박대출 박성호 박원석 배기운 백재현 변재일 설훈 손인춘 강은희 고희선 김광진 김동철 김민기 김선동 김세연 김영환 김을동 김정록 김진표 김태환 김현국 김희국 남인순 문병호 민병두 박남춘 박민식 박수현 박주선 배재정 부좌현 손인춘 신기남 신장용 안규백 안덕수 염동열 우상호 유대운 유인태 윤재옥 이만우 이에리사 李宰榮 이찬열 이해찬 임수경 정수성 정청래 진선미 최봉홍 한명숙 황우여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국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유명희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은수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이상일	이석기	이석현	이에리사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과현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서병수	서용교	설훈	손인춘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장하나	전병헌	전하진	정문헌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유재중	윤관석	유명희	윤상현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재천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황주홍	황진하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기권 의원(2인)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전순옥	전정희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전순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2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춘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상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훈	김성주	김성태	김선동	김성곤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중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4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率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5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준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연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종 훈	김 진 표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은 수 미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린	남 경 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용 래	도 중 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일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희 상
이 석 기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박 대 출	박 민 수	박 성 호	박 완 주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흥 근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결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설 훈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장 병 완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순 옥	심 재 권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전 정 희	전 하 진	정 문 현	정 병 국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원 진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조 정 식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진 성 준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동 익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최 봉 흥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은 수 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일
황 우 여	황 주 흥	황 진 하		이 석 기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반대 의원(1인)

송 광 호

기권 의원(4인)

김 을 동 김 현 숙 민 병 주 신 경 립
 (한선교·이학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20인, 찬성 의원 215인, 기권 의원 4인임)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191인)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회 선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반대 의원(6인)

김 제 남	박 성 효	박 원 석	심 상 정
정 진 후	주 호 영		

기권 의원(18인)

강 동 원	김 상 민	김 성 주	김 재 원
김 태 원	민 병 주	박 수 현	서 용 교
심 윤 조	심 재 철	이 진 복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장 하 나	한 기 호
홍 익 표	홍 일 표		

이 인 영	이 자 스 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하 나	전 정 희
전 하 진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재 천	추 미 애	하 대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4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고 희 선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중 환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민 수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용 교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석 기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이 재

기권 의원(3인)

김 형 태	전 순 욱	홍 의 락
-------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중 환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민 수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용 교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신학철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기운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노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성완종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우현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유기홍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은수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이목희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최동익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6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반대 의원(2인)

추미애 한명숙

기권 의원(4인)

남인순 유대운 이미경 장하나

(정의화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6인, 기권 의원 4인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98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고희선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봉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유운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5인)

김미희	김재연	오병운	이상규
이석기			

기권 의원(6인)

김제남	김희정	심재철	오영식
전순옥	조해진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8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봉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심학봉	안규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미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희 국	김 희 정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용 래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준	유 기 홍	도 중 환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문 희 상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민 수	박 성 호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은 수 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이 상 일	이 석 기	이 석 현	이 언 주	박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서 용 교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이 원 욱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재 오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학 봉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임 내 현	임 수 경	장 하 나	전 하 진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준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조 경 태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규 성	윤 관 석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최 봉 홍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은 수 미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일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이 석 기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우 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황 주 홍	황 진 하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반대 의원(4인)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경 대 수	김 재 원	송 광 호	한 기 호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기권 의원(4인)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김 기 선	김 종 훈	전 순 욱	황 영 철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하 나	전 순 욱	전 정 희	전 하 진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봉 홍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6인)			
				김 현	민 병 주	윤 명 희	이 노 근
				장 병 완	한 기 호		

○10·27법안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0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회 선
김 경 협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李率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0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석현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0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미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2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태원 김현미 김희정 노영민 문재인 민현주 박대동 박성효 박인숙 박홍근 백재현 서용교 송영근 신성범 심상정 안덕수 안효대 오영식 원유철 유승민 유인태 윤영석 이강후 이목희 이석기 이완영 이인영 이재오 이진복 이학재 인재근 장하나 정문헌 정우택 정호준 진선미 최봉홍 한선교 홍영표 홍종학 황주홍

김종훈 김태환 김현숙 김현미 나성린 노용래 문정림 민홍철 박대출 박수현 배기운 변재일 성완종 신경립 신의진 심윤조 안종범 양승조 오제세 유기준 유승우 유일호 이노근 이미경 이석현 이우현 이자스민 이종걸 이찬열 이한성 임내현 전순옥 정병국 정의화 조원진 진성준 추미애 한정애 홍지만 황진하

김진표 김한표 김형태 남경필 도종환 문희상 박기춘 박민수 박완주 박창식 배재정 손인춘 신계륜 신장용 심재철 안철수 염동열 우상호 유기홍 유승희 윤관석 이만우 이상규 이언주 이운룡 이재영 이채익 이현승 임수경 전정희 정성호 정진후 조해진 최경환 한기호 함진규 홍익표 황영철

김태년 김현 김희국 남인순 문병호 민병주 박남춘 박성호 박원석 박혜자 백군기 서병수 송광호 신기남 안규백 안홍준 오병윤 유대운 유은혜 윤명희 은수미 이명수 이상일 이에리사 이원욱 李宰榮 이종훈 이학영 이현재 장병완 전하진 정수성 정청래 주영순 최규성 한명숙 홍문표 홍일표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심학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5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립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유대운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승우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재옥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강후	이노근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미경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이헌승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이현승	정수성	정문헌	정병국
이헌승	정청래	정우택	정의화
이헌승	주영순	정호준	조원진
이헌승	최규성	진선미	진성준
이헌승	한명숙	최봉홍	추미애
이헌승	홍문표	한선교	한정애
이헌승	홍일표	홍영표	홍의락
이헌승	황우여	홍종학	홍지만
이헌승		황주홍	황진하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원진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원진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부좌현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정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서용교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립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우남	김을동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립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서용교	성완종	손인준	송광호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정호준	조원진	조해진	주호영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황우여	황진하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기권 의원(1인)

윤후덕

(인재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5인, 기권 의원 1인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5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근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봉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근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봉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李宰榮	이종훈	이진복	이종걸
이철우	이현승	이학영	이찬열
이현승	임수경	인재근	
임수경	정갑윤	전정희	
정갑윤	정수성	정성호	
정수성	정청래	정진후	
정청래	조해진	조원진	
조해진	최규성	진성준	
최규성	한선교	한기호	
한선교	홍의락	홍문표	
홍의락	홍지만	홍중학	
홍지만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봉 홍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재 영	李宰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진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86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고 희 선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연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립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민 수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영 교
서 용 교	성 완 중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룡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반대 의원(8인)

경 대 수	김 재 원	김 제 남	박 원 석
이 노 근	이 진 북	정 진 후	한 기 호

기권 의원(6인)

박 성 호	손 인 춘	심 상 정	오 병 윤
이 상 규	홍 익 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7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립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김우남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김중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성완중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립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운조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노응래	도종환	류성결	문병호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윤영석	윤재욱	윤후덕	이강후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성완중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립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운조
이자스민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전순욱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윤재욱	윤후덕	이강후	이군현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홍지만	황영철	황진하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순욱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4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송 호 창 심 상 정 안 철 수 양 승 조
 오 병 윤 우 상 호 유 기 준 은 수 미
 이 상 규 李宰榮 이 중 훈 이 춘 석
 이 학 재 임 수 경 장 병 완 장 하 나
 전 순 옥 전 정 희 정 의 화 정 진 후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홍 영 표
 황 진 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33인)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훈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을 동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회 정 나 성 립
 남 경 필 노 웅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문 병 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인 숙 박 지 원 박 창 식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영 교 서 용 교 성 완 중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중 범 안 홍 준 안 효 대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원 유 철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우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욱
 이자스민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중 결
 이 중 진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호 준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최 규 성
 최 봉 홍 추 미 애 한 기 호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41인)

강 동 원 김 경 협 김 광 진 김 미 희
 김 상 희 김 용 익 김 재 연 김 제 남
 김 춘 진 김 회 국 남 인 순 박 민 수
 박 원 석 박 홍 근 배 기 운 서 기 호

기권 의원(27인)

김 기 준 김 상 민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영 주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현 미
 노 영 민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주 선
 배 재 정 우 윤 근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이 미 경 이 우 현 이 인 영
 전 해 철 정 병 국 정 청 래 정 희 수
 한 선 교 한 정 애 홍 종 학
 (오영식 의원 착오로 이윤석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201인, 기권 의원 27인
 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52인)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현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을 동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립
 남 경 필 노 웅 래 도 중 환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영 교 서 용 교 성 완 중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중 범 안 효 대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욱
 윤후덕 이강후 이근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자스민 이재영 이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임내현 장병완
 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1인)

강동원 김광진 김상희 김용익
 김재연 박민수 박홍근 송호창
 양승조 오병윤 우상호 은수미
 이상규 이춘석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정청래
 홍익표

기권 의원(23인)

강길부 김기준 김미희 김성주
 김영주 김태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문병호 박완주 박혜자
 서기호 심상정 안철수 유승희
 유은혜 이미경 이인영 이종훈
 전해철 한정애 홍종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7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고희선 권성동 김경협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립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욱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근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진순옥 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경대수 문병호 안덕수 이철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58인)

강 동 원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김 경 협	김 기 준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중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중 환	문 병 호	문 희 상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민 수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윤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영 교	서 용 교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학 봉
안 규 백	안 중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이 상 규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인 영	이자스민	李 宰 榮	이 재 오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하 나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명 철	주 영 순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봉 흥	추 미 애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6인)

고 회 선	권 성 동	김 광 진	김 회 국
박 대 출	주 호 영		

기권 의원(33인)

강 석 호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현
-------	-------	-------	-------

김 상 민	김 영 우	김 을 동	김 태 원
김 현 숙	문 정 립	민 병 주	성 완 종
신 경 립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안 덕 수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재 중
윤 명 희	이 군 현	이 노 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재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정 수 성	정 희 수	조 해 진	한 기 호
홍 지 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89인)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회 선	권 성 동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을 동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제 남	김 중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희 정	나 성 립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중 환	문 병 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민 수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영 교	서 용 교	성 완 종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기 남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중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이 상 규	이 상 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이인영	이자스민	이宰榮	이재영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근기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이채익	이철우	이준석	이학재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추미애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황진하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기권 의원(4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박원석	전순욱	정진후	홍익표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욱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출석 의원(281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개의 시 재석 의원(200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학재
이한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최원식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35인)

강은희	김광진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용익	김재윤	김한표
김현	남인순	노웅래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인숙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서영교	손인춘
신경림	신의진	심윤조	염동열
원유철	이명수	이상규	이상직
이원욱	이철우	임수경	정호준
진선미	진성준	함진규	

○청가 의원(10인)

강기정	강석훈	김기식	김태호
문대성	박덕흠	서상기	신경민
유성엽	윤호중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장정진	석규수
입법차장	장임전	상
의사국장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교육부장관	서오남
외교부장관	윤병길
통일부장관	류황교
법무부장관	황관진
국방부장관	김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이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윤조승
여성가족부장관	서윤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출석 정부위원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욱
환경부차관	정연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부 위 원 장 정 찬 우

【보고사항】

○간사 개선

위원회	교섭단체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국회운영	새누리당	김기현	이철우	2013. 4. 29

○의안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최동익·윤관석·배기운·최재성·전병헌·김재윤·유승희·유은혜·한명숙·이낙연·김성주·도종환·남인순 의원 발의)

4월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김관영·배기운·김춘진·이윤석·안규백·유성엽·송호창·전병헌·부좌현·민홍철 의원 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전정희·김관영·유승희·전순옥·김춘진·최원식·강동원·전병헌·유성엽·김상희·임수경·김제남·박주선·인재근·최민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김기준·김현미·남인순·문병호·배기운·윤관석·이상직·이종걸·이학영·최민희 의원 발의)

4월 30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이병석·이자스민·이미경·남경필·이주영·안홍준·김기현·李宰榮·문정림·강길부·민현주·이만우·윤재옥·金永柱·강석호·정병국·이완영·이인제·홍지만·조해진·서용교·이노근·조현룡·안효대·김명연·손인춘·박대출·신의진·김태원·김현숙·정수성·박성효·김재원·이한성·김영우·송광호·홍문표·김희국·김정록·김동완·김성태·최봉홍·주영순·김상민·김희선·노철래·유승우·이종훈·서상기·윤명희·박성호·이철우·남인순·이우현 의원

발의)

4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노영민·홍의락·인재근·박완주·주승용·강창일·최규성·김진표·오영식·우윤근·김성주 의원 발의)

전북과학기술원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유성엽·최규성·전병헌·이상직·이춘석·최원식·김성주·김관영·전정희·최민희·김춘진·김윤덕·박민수·강동원·심재권·오영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백군기·진성준·송영근·한명숙·정세균·김용익·이석현·유인태·안규백·김성곤·김광진·손인춘 의원 발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백군기·진성준·송영근·한명숙·정세균·김용익·이석현·유인태·안규백·김성곤·손인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3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김성곤·유성엽·유승희·배기운·이원욱·전병헌·원혜영·홍종학·전정희·문병호·최민희·조정식·이해찬·강창일·민홍철·김광진·심재권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김기선·이한성·정문헌·윤명희·유승우·황영철·김진태·이우현·권성동·강기윤·한기호·이상민·김기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이종진·유기준·윤진식·경대수·이만우·이채익·김도읍·이명수·조명철·이자스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3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최동익·윤관석·배기운·최재성·

전병헌 · 김재윤 · 유승희 · 유은혜 · 한명숙 · 이낙연 · 김성주 · 도종환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9 최민희 · 민홍철 · 배기운 · 윤관석 · 김윤덕 · 조정식 · 이낙연 · 홍종학 · 전병헌 · 이명수 · 유성엽 · 전순옥 · 전정희 · 김재윤 · 김성곤 · 박남춘 · 도종환 · 심재권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9 최민희 · 민홍철 · 배기운 · 윤관석 · 김윤덕 · 조정식 · 이낙연 · 홍종학 · 전병헌 · 이명수 · 유성엽 · 전순옥 · 전정희 · 김재윤 · 김성곤 · 박남춘 · 도종환 · 심재권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전정희 · 박남춘 · 임수경 · 유승희 · 전순옥 · 김춘진 · 유성엽 · 김관영 · 김제남 · 이석현 · 박주선 · 최민희 의원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한명숙 · 유기홍 · 유은혜 · 최동익 · 김광진 · 서기호 · 배재정 · 김우남 · 전순옥 · 박원석 · 임수경 · 신경민 · 도종환 · 박홍근 · 유승희 · 김상희 · 박남춘 · 최원식 · 박혜자 · 강동원 · 장하나 · 은수미 · 김경협 · 백재현 · 홍영표 · 윤후덕 · 강창일 · 김태년 · 배기운 · 정진후 · 인재근 · 심상정 · 김제남 · 이미경 · 원혜영 · 김재윤 · 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이명수 · 김세연 · 이장우 · 이현승 · 이노근 · 박상은 · 김관영 · 문병호 · 민홍철 · 윤진식 의원 발의)

**4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전정희 · 김관영 · 전순옥 · 김춘진 · 최원식 · 강동원 · 유성엽 · 임수경 · 김제남 · 박주선 · 인재근 · 최민희 의원 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전정희 · 김관영 · 유승희 · 전순옥 ·

김춘진 · 최원식 · 강동원 · 전병헌 · 유성엽 · 김기준 · 김상희 · 남인순 · 임수경 · 김제남 · 박주선 · 인재근 · 최민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3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3. 4. 30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3. 4. 30 정무위원장 제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3. 4. 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3. 4. 30 기획재정부위원장 제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4. 30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4. 30 국방위원장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4. 30 안전행정부위원장 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3. 4. 30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3. 4. 30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13. 4. 30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3. 4. 30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2. 8. 20 정부 제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31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이낙연·신계륜·이원욱·최동익·유대운·김현미·김승남·배기운·홍종학·오제세·전정희·정성호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20 정부 제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1 심재철·이완영·권은희·박인숙·정성호·김장실·전정희·강은희·김정록·조현룡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3. 2. 27 정갑윤·원유철·박민식·김세연·김을동·김한표·전하진·송영근·홍문중·김태환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3. 3. 28 이춘석·서기호·최원식·서영교·박영선·박주선·박범계·박지원·이학영·강창일·전해철·권성동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이낙연·양승조·강기윤·이상민·김제남·주승용·배기운·김성곤·이윤석·이재영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김우남·이윤석·김세연·강기정·백재현·김성곤·김동철·안민석·이낙연·

유성엽·김영록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덕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 4 안덕수·윤진식·박민식·주영순·이진복·염동열·박상은·강기윤·강석훈·홍일표 의원 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양승조·박남춘·박홍근·김용익·조정식·전병헌·백재현·김성주·박완주·배기운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중범 의원 대표발의)

(2012. 5. 30 안중범·김성태·김광림·조해진·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박근혜·류성걸·김현숙·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중범 의원 대표발의)

(2012. 5. 30 안중범·김광림·조해진·김성태·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진영·이종훈·이자스민·민병주·윤명희·김상민·박근혜·류성걸·김현숙·박성호·류지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3. 2. 1 이종걸·추미애·김영록·배기운·안민석·김영주·김영환·노희찬·민병두·강기정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23 정부 제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12. 5. 30 진영·김성태·김광림·조해진·안중범·김동완·김정록·강은희·신의진·이만우·김장실·손인춘·민현주·최봉홍·이종훈·민병주·윤명희·이자스민·김상민·서용교·박근혜·홍일표·김현숙·이한구·김태원·남경필·김학용·류지영·박성호·류성걸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2. 6. 8 오제세 · 최규성 · 김성곤 · 강창일 · 장병완 · 김우남 · 이낙연 · 이찬열 · 최재성 · 양승조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이상직 · 최규성 · 이춘석 · 문병호 · 홍의락 · 진성준 · 조정식 · 김관영 · 오영식 · 전순옥 · 김현미 · 안규백 · 김운덕 · 이석현 · 유인태 · 원혜영 · 정성호 · 전정희 · 박민수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의원 발의)

(2012. 7. 12 홍영표 의원 외 126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2. 8. 2 노웅래 · 우윤근 · 신장용 · 김용익 · 신경민 · 김재윤 · 김춘진 · 백재현 · 황주홍 · 이목희 · 정청래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3 이목희 · 정성호 · 이인영 · 김현미 · 인재근 · 윤후덕 · 우원식 · 박완주 · 유은혜 · 백재현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9. 6 전병헌 · 이상직 · 신경민 · 김재윤 · 홍종학 · 정성호 · 신장용 · 김성주 · 김관영 · 이상민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2 이상직 · 안규백 · 이춘석 · 유대운 · 최원식 · 김기준 · 전순옥 · 유성엽 · 배기운 · 강동원 · 문병호 · 김운덕 · 김현미 · 정성호 · 김성주 · 민병두 · 전정희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6. 25 정부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2. 6. 29 이목희 · 인재근 · 송호창 · 이미경 · 최규성 · 진성준 · 홍종학 · 박완주 · 우원식 · 이석현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2. 7. 19 김영주 · 김성주 · 진성준 · 조정식 · 이춘석 · 홍종학 · 배기운 · 전정희 · 장병완 · 유대운 · 박민수 · 문병호 · 김동철 · 원혜영 · 오제세 · 이상직 · 이미경 · 김기식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이종걸 · 배기운 · 양승조 · 전병헌 · 장병완 · 변재일 · 김영환 · 김영주 · 우원식 · 신경민 · 김기준 · 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2. 7. 4 김관영 · 신장용 · 노영민 · 안규백 · 김성주 · 강기정 · 진성준 · 김동철 · 김현 · 전정희 · 배기운 · 김영록 · 장병완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21건 정무위원장 보고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2. 11. 5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2. 6. 13 김현숙 · 신의진 · 문대성 · 남경필 · 서용교 · 김태호 · 한선교 · 홍지만 · 민현주 · 강석훈 · 안종범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2. 6. 20 우윤근 · 최민희 · 김우남 · 최동익 · 김진표 · 신장용 · 임내현 · 노영민 · 이춘석 · 박영선 · 정성호 · 주승용 · 안민석 · 김영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 김광림 · 나성린 · 류성걸 · 이만우 · 이한성 · 김현미 · 李宰榮 · 정두언 · 최경환 · 정성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3. 4. 5 나성린 · 이헌승 · 김희국 · 김태호 · 류성걸 · 홍지만 · 이만우 · 이한성 · 성완중 · 하태경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2. 6. 13 김현숙 · 신의진 · 문대성 · 남경필 · 서용교 · 김태호 · 한선교 · 홍지만 · 민현주 · 강석훈 · 안종범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2. 6. 20 우윤근 · 최민희 · 김우남 · 최동익 · 김진표 · 신장용 · 임내현 · 노영민 · 이춘석 · 박영선 · 정성호 · 주승용 · 안민석 · 김영록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포물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황주홍 · 주승용 · 김동철 · 이낙연 · 김성곤 · 우윤근 · 김우남 · 김재윤 · 문병호 · 김영록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2. 6. 19 장병완 · 김동철 · 백재현 · 전병헌 · 도종환 · 황주홍 · 박혜자 · 조정식 · 강기정 · 김영록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2. 6. 14 김태원 · 유기준 · 이종훈 · 주영순 · 김정훈 · 전하진 · 김성찬 · 민현주 · 유승민 · 김종훈 · 김희국 · 김동완 · 한선교 · 이재균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2. 6. 22 박인숙 · 이낙연 · 주영순 · 서상기 · 남경필 · 김정록 · 유성엽 · 김명연 · 안홍준 · 이현재 · 김종훈 · 노철래 · 이만우 · 이종진 · 이재균 · 한선교 · 이종훈 · 정성호 · 송광호 · 성완중 · 권은희 · 강기윤 · 최경환 · 이자스민 · 이재영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2. 6. 13 현영희 · 김세연 · 유재중 · 한기호 · 김동완 · 이채익 · 김태호 · 신성범 · 정두언 · 서상기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2. 6. 19 장병완 · 김동철 · 백재현 · 전병헌 · 도종환 · 황주홍 · 박혜자 · 조정식 · 강기정 · 김영록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2. 6. 22 박인숙 · 이낙연 · 주영순 · 서상기 · 남경필 · 김정록 · 유성엽 · 김명연 · 안홍준 · 이현재 · 김종훈 · 노철래 · 이만우 · 이종진 · 이재균 · 한선교 · 이종훈 · 정성호 · 송광호 · 성완중 · 권은희 · 강기윤 · 최경환 · 이자스민 · 이재영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25 정부 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전병헌 · 배기운 · 이종걸 · 김성곤 · 김우남 · 홍영표 · 이학영 · 신장용 · 최동익 · 박남춘 · 최민희 · 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 8 정부 제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정문헌 · 김정록 · 손인춘 · 한기호 · 김진태 · 김기선 · 염동열 · 김동완 · 박성호 · 황진하 · 정희수 · 김재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3. 2. 5 이해찬 · 홍영표 · 김현 · 김용익 · 박수현 · 김태년 · 원혜영 · 안규백 · 유인태 · 추미애 · 한명숙 · 김성주 의원 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3. 3. 14 우상호 · 조정식 · 윤관석 · 김현미 · 정성호 · 윤호중 · 심재권 · 이인영 · 전해철 · 박인숙 · 유은혜 · 유성엽 · 설훈 · 배기운 · 김춘진 · 김민기 · 이명수 · 신장용 · 전순옥 · 홍종학 · 이해찬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2. 6. 25 정우택 · 이한성 · 김현숙 · 박대출 · 김장실 · 박인숙 · 김성찬 · 김정록 · 이종진 · 남경필 · 조현룡 의원 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박성호 · 전병헌 · 이만우 · 이재영 · 김영주 · 김태원 · 서상기 · 최동익 · 박인숙 · 정성호 · 김장실 · 강기윤 · 김동완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6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2. 12. 6 신학용 · 이인영 · 안민석 · 김춘진 · 유승우 · 이상직 · 김우남 · 강창일 · 윤관석 · 김성곤 · 전해철 · 정호준 · 신경민 · 배기운 · 전순옥 의원 발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2. 12. 13 정갑윤 · 이한성 · 김재경 · 정문헌 · 정희수 · 이진복 · 정진후 · 강길부 · 장윤석 · 송영근 · 이재영 · 안홍준 · 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2. 7. 6 김성찬 · 황진하 · 신동우 · 김진태 · 신경림 · 유승민 · 김근태 · 주승용 · 주영순 · 강기윤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2. 7. 30 김태원 · 유기준 · 김동완 · 박인숙 · 강석호 · 강기윤 · 박성호 · 조현룡 · 송영근 · 이자스민 · 김영우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김종태 · 윤진식 · 이만우 · 유성엽 · 문대성 · 송광호 · 김근태 · 한기호 · 민홍철 · 송영근 · 이에리사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신학용 · 변재일 · 김동철 · 오제세 · 김관영 · 박남춘 · 양승조 · 유승민 · 이에리사 · 김세연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송영근 · 김종태 · 남경필 · 류지영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정문헌 · 정수성 · 한기호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16 정부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2. 26 송영근 · 권성동 · 김세연 · 홍지만 ·

황진하 · 황영철 · 한기호 · 남경필 · 서용교 · 김상민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국방위원장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13. 4. 9 김태환 · 김재경 · 윤재옥 · 이철우 · 심학봉 · 주호영 · 박덕흠 · 고희선 · 황영철 · 이현재 · 권은희 · 金永柱 · 정희수 · 박성호 · 이운룡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3. 3. 8 윤후덕 · 이찬열 · 최원식 · 배기운 · 문병호 · 신장용 · 전정희 · 신경민 · 이만우 · 김기준 · 염동열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안전행정위원장 보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2. 8. 31 윤명희 · 이에리사 · 유성엽 · 송광호 · 김종태 · 김우남 · 박인숙 · 이만우 · 김동완 · 이노근 · 조명철 · 신경림 · 민현주 · 강은희 · 김학용 · 이장우 · 김상민 · 남경필 · 윤재옥 · 강석호 · 김재원 · 황영철 · 최규성 · 이자스민 · 김태흠 · 신의진 · 류지영 · 김춘진 · 김을동 · 서상기 · 정희수 · 송영근 · 이채익 · 원유철 · 윤진식 · 김장실 · 신성범 · 김근태 · 홍문표 · 경대수 · 손인춘 · 유승우 · 최봉홍 · 진영 · 김영우 · 전정희 · 고희선 · 김영록 · 주영순 · 김정록 · 민병주 · 김진태 · 홍지만 · 김한표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함진규 · 이노근 · 김태흠 · 이종진 · 이이재 · 강석호 · 문대성 · 이현재 · 원유철 · 송광호 의원 발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성완중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 성완중 · 홍문표 · 김태흠 · 박수현 · 양승조 · 이장우 · 손인춘 · 박성호 · 김명연 · 주영순 · 김동완 · 함진규 · 박완주 · 박남춘 · 최원식 · 이학영 · 신장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3. 3. 6 이강후 · 강은희 · 이우현 · 이한성 ·
권성동 · 이인제 · 원유철 · 전하진 · 염동열 ·
박완주 · 김기선 · 한기호 · 이철우 의원 발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13. 3. 8 오영식 · 김관영 · 홍의락 · 박완주 ·
우윤근 · 이종걸 · 김동철 · 배재정 · 인재근 ·
백재현 · 한명숙 · 최동익 · 김영록 · 전순옥 ·
김영환 · 조정태 · 노영민 · 이원욱 · 김민기 ·
이목희 · 추미애 · 부좌현 · 전정희 · 윤관석 ·
최민희 · 장병완 · 이춘석 · 홍종학 · 박주선 ·
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2. 7. 16 전해철 · 배기운 · 주승용 · 박영선 ·
백재현 · 최규성 · 유대운 · 문병호 · 홍일표 ·
부좌현 · 김재윤 · 정성호 · 한정애 · 박남춘 ·
이미경 · 민홍철 · 김영환 · 강기정 · 유성엽 ·
김윤덕 · 이상민 · 홍종학 · 황주홍 · 김현 ·
박범계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 1. 10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발의)

(2012. 5. 30 정세균 의원 외 126 인 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2. 9. 27 이현재 · 이채익 · 서용교 · 김태원 ·
박대출 · 김종태 · 이만우 · 윤명희 · 주영순 ·
손인춘 · 권은희 · 송영근 · 민병주 · 박대동 ·
이이재 · 이완영 · 여상규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3. 2. 27 이채익 · 서용교 · 김영우 · 이진복 ·
이종진 · 김을동 · 박성호 · 현영희 · 이재영 ·
노철래 · 장윤석 · 윤명희 · 이한성 · 안종범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2. 11. 6 김상훈 · 박민식 · 김재경 · 권은희 ·

유승우 · 이진복 · 신성범 · 박대동 · 정희수 ·
김한표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박완주 · 이학영 · 이춘석 · 양승조 ·
오영식 · 김용익 · 최동익 · 문정립 · 신경림 ·
우원식 · 이목희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3. 2. 27 이채익 · 서용교 · 김영우 · 이진복 ·
이종진 · 김을동 · 박성호 · 현영희 · 이재영 ·
노철래 · 장윤석 · 윤명희 · 이한성 · 안종범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 보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10 정부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2. 7. 11 최봉홍 · 박성호 · 신성범 · 김한표 ·
류지영 · 조원진 · 여상규 · 정희수 · 은수미 ·
윤명희 · 박창식 · 강은희 · 송영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2012. 9. 28 정부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3. 4. 8 심상정 · 강동원 · 김경협 · 김제남 ·
서기호 · 박원석 · 장하나 · 정진후 · 한정애 ·
홍영표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2. 7. 26 이목희 · 최규성 · 김현미 · 이미경 ·
이석현 · 정성호 · 인재근 · 유은혜 · 송호창 ·
박완주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2. 8. 1 홍영표 · 이윤석 · 이목희 · 이용
섭 · 이인영 · 안규백 · 한명숙 · 김경협 · 은수
미 · 윤관석 · 윤후덕 · 장하나 · 한정애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2. 8. 14 김성태·안홍준·남경필·김정록·최봉홍·전하진·박민식·노철래·김우남·이완영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2. 8. 16 정우택·박인숙·金永柱·김장실·황영철·원유철·전하진·송광호·남경필·김현숙·김성찬·이장우·이한성·조현룡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2. 8. 22 이완영·김현숙·최봉홍·김정록·이채익·강길부·윤영석·이한성·경대수·서상기·김성태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이명수·정희수·강기윤·李宰榮·정의화·강석호·김을동·김정록·이채익·박인숙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강석호·김한표·이명수·강기윤·이노근·박상은·이이재·조현룡·윤진식·안효대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2. 5. 30 양승조·김동철·강기정·오제세·이낙연·변재일·주승용·박주선·장병완·이석현·박병석 의원 발의)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2. 6. 4 박주선·최규성·강창일·오제세·장병완·김동철·김상희·김우남·우윤근·노영민·김성곤·양승조·주승용·이윤석·배기운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12. 6. 5. 서병수·김세연·안홍준·유기준·이현승·여상규·노철래·전하진·정우택·신성범·유재중·박인숙·주영순·김희국·김종훈·윤명희·박민식·김도읍·정의화·서용교·현영희·나성린·류지영·김정훈·

이재균·정갑윤·문대성·이장우·이채익·이현재·김희정·고희선·이진복·하태경 의원 발의)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2. 6 안민석·양승조·전병헌·김우남·김성곤·이상민·김현미·안규백·김춘진·강창일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17 정부 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2. 4 이노근·신의진·홍문종·김동완·박인숙·함진규·이완영·김한표·강길부·이명수·이이재·이장우·이현승·김태흠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3. 2. 5 한기호·정희수·황영철·김용태·송영근·이철우·최봉홍·정문헌·조현룡·김진태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3 김상희·심상정·배재정·배기운·김윤덕·윤관석·홍영표·우원식·장하나·한정애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9 김현숙·강석훈·홍지만·문대성·강은희·민현주·이자스민·민병주·신의진·이완영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 16 정희수·이명수·박대동·박인숙·한기호·정성호·이철우·김태원·권은희·고희선 의원 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김우남·이윤석·김세연·강기정·백재현·김성곤·김동철·안민석·이낙연·유성엽·김영록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7 류지영 · 박덕흠 · 정희수 · 최봉홍 ·
김정록 · 송영근 · 윤명희 · 고희선 · 이재영 ·
홍지만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김우남 · 김세연 · 전병헌 · 김성곤 ·
황주홍 · 김재원 · 김재윤 · 윤명희 · 백재현 ·
강기정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4 인재근 · 백재현 · 우원식 · 유은혜 ·
박홍근 · 이목희 · 홍의락 · 장하나 · 김민기 ·
이인영 · 이춘석 · 김승남 · 민병두 · 전순옥 ·
진선미 · 이상직 · 유인태 · 배기운 · 전병헌 ·
최규성 · 최동익 · 우윤근 · 홍종학 · 노영민 ·
우상호 · 신경민 · 박완주 · 김재윤 · 이미경 ·
이자스민 · 유승희 · 이낙연 · 심재권 · 진성준 ·
노웅래 · 윤관석 · 강창일 · 홍익표 · 정청래 ·
남인순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 이자스민 · 문대성 · 이현재 · 李宰榮 ·
이한성 · 정문헌 · 김태원 · 송영근 · 이종훈 ·
이재영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박성호 · 이재영 · 황영철 · 김태원 ·
서상기 · 이노근 · 李宰榮 · 강기윤 · 김명연 ·
김정록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서면질문서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 관련에 관한 질문서**

(2013. 4. 29 원혜영 의원 제출)